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 시설학대를 중심으로 -



대구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목차



01 행정처분의 기준



02 시설학대(인권침해) 사례



03 노인학대의 유형별 사례



04 시설학대 예방법

[행정처분 기준]

시설학대

[2023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수행지침]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지는 자 또는
시설장의 감독하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입소 또는 이용하는 노인
에 대한 신체, 정서,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방임, 유기하는 것을 말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신체적 학대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
성적 학대	지정취소	-	-	-
방임 학대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경제적 학대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정서적 학대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

[시설학대(인권침해) 사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사례

가. 학대행위자 : 종사자(요양보호사)

나. 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다. 주요 학대 행위 : 요양보호사가 침대에 누어있는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기저귀로 옷을 벗은 채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침

라. 결과

- 노인보호전문기관 : **[신체적 학대] 판정**
- 관할 지자체 :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 시설 : 처분 불복, 처분 취소 소송 제기

기저귀로 입소자 성기를 친 사례

마. 시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 요양보호사는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단지 기저귀 착용을 거부하면서 손으로 성기를 가리는 피해자의 손을 가볍게 쳤을 뿐, 이는 피해자에게 기저귀를 갈아야 하니 손을 치우고 그 과정에서 소변을 보면 안된다고 주의를 주기 위한 의도였다

2) 면책사유의 존재

- ① 매년 의무교육 및 분기별 자체교육 이수 ② 종사자 윤리지침, 인권보호지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교재 등을 배포하고, 주기적인 회의 및 면담을 통하여 이를 숙지 및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 ③ 네이버 '밴드'를 통해 종사자들로부터 상시 업무보고를 받고, 각 수급자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시·관리하였고, 보호자들에게도 수급자들의 생활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수시로 개별 상담 등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④ CCTV설치 관리 등을 하는 등 노인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였다고 주장함



기저귀로 입소자 성기를 친 사례

마. 시설의 주장

3) 재량권 일탈 남용

- 이 시설은 평소 수급자 및 그 보호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점, 이 사건 처분사유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적 행위에 불과하고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피해도 경미한 점, 원고는 평소 수급자들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요양보호사를 증원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한 요양보호사들을 퇴사시키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평판 저하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저귀로 입소자 성기를 친 사례

바. 법원의 판단

1) 처분 사유의 존부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기저귀로 옷을 벗은 채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의도적으로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면책사유 존부

- 이 사건 시설 종사자들은 2020년에 각 2회에 걸쳐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실, 원고 및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은 2019.5.16.부터 2020.1.15.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노인학대와 관련된 주제로 회의를 한 사실, 원고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이 사건 시설 종사자들로부터 상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였고, 때로는 개별 수급자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은 수시로 수급자들의 보호자들과 전화 상담을 하였고, 수급자들의 생활 및 활동 내용을 네이버 밴드를 통해 보호자들에게 공유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시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를 설치



기저귀로 입소자 성기를 친 사례

바. 법원의 판단

하고, 이를 상시 녹화되는 상태로 관리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반적인 조치들을 이행해왔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 단서에 규정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시설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이 사건 시설 종사자들이 받은 교육도 이와 같은 의무교육의 일환일 뿐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시설에서 이루어진 9회의 노인학대 관련 회의 중, 이 사건 처분사유의 가해자가 참석한 회의는 2회에 불과하다.



기저귀로 입소자 성기를 친 사례

바. 법원의 판단

(3)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CCTV로 녹화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보호자에 의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4) 무엇보다도, 이 사건 시설의 수급자인 노인들이 기저귀 착용 등을 거부할 개연성은 일반적으로도 상당하다고 보이고,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특히 기저귀 착용 및 교체에 극심한 거부반응을 보여왔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해자 등 수급자들이 기저귀 착용 및 교체에 저항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었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설 종사자들이 받은 교육 자료, 이 사건 시설에서 이루어진 회의,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과 소통한 네이버 밴드 등 어디에도 위와 같은 상황 및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기저귀로 입소자 성기를 친 사례

바. 법원의 판단

3) 재량권 일탈·남용

-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은 물론 극도의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점(오히려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기에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클 여지도 있다), ② 피해자가 가림막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저귀 케어에 저항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이 사건 시설의 평판이 저하되고 영업에 곤란이 초래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부과 여부 및 경중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점,



기저귀로 입소자 성기를 친 사례

바. 법원의 판단

3) 재량권 일탈·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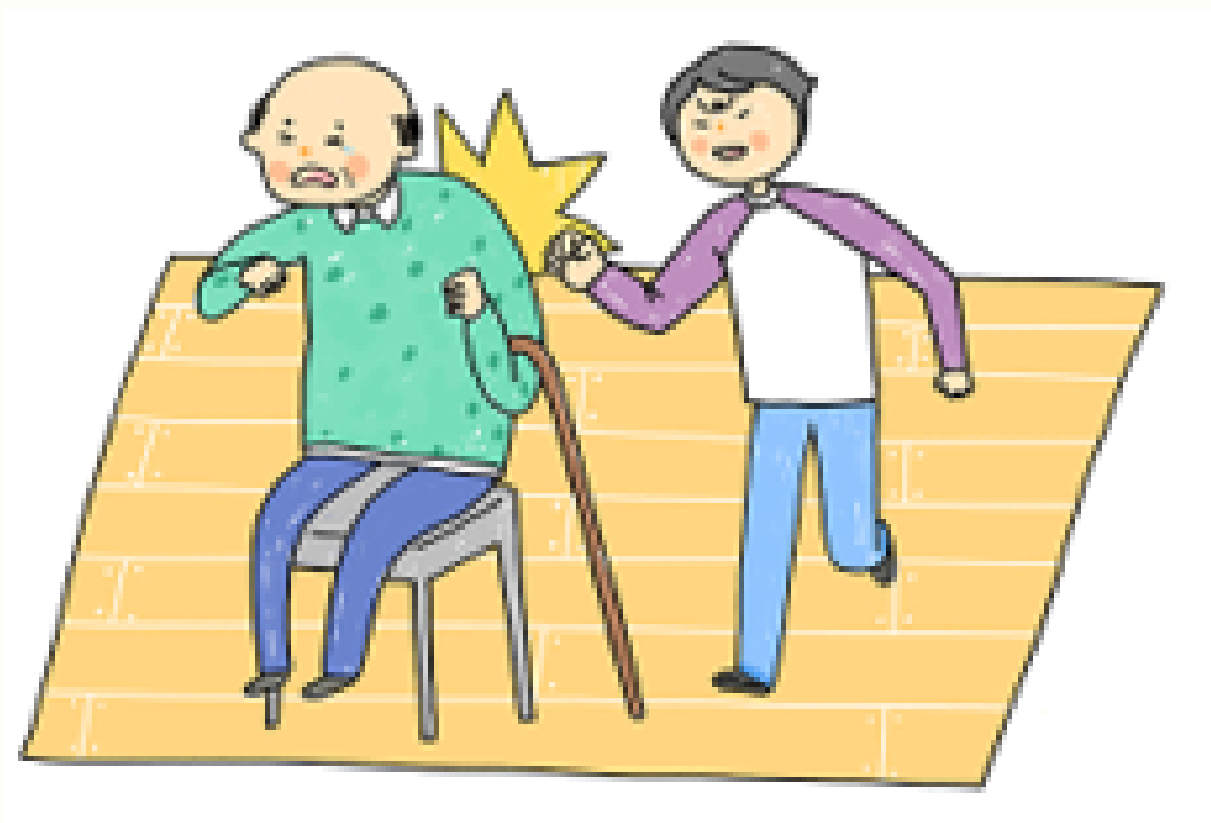
- ⑤ 이 사건 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처분기준 상 감경을 거쳐 과징금으로 대체하기까지 한 최하한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노인학대 유형별 사례]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신체적 학대 대표적 행위

-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
- 감금이나 거주지 출입 통제
- 신체 구속
- 물건을 던지거나 흥기로 위협
-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 식사, 음료 등을 단절
-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임
- 원치 않는 일(노동)을 강요 시키는 행위

예측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
-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체중감소
- 묶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노인복지시설의 구분

구분		내용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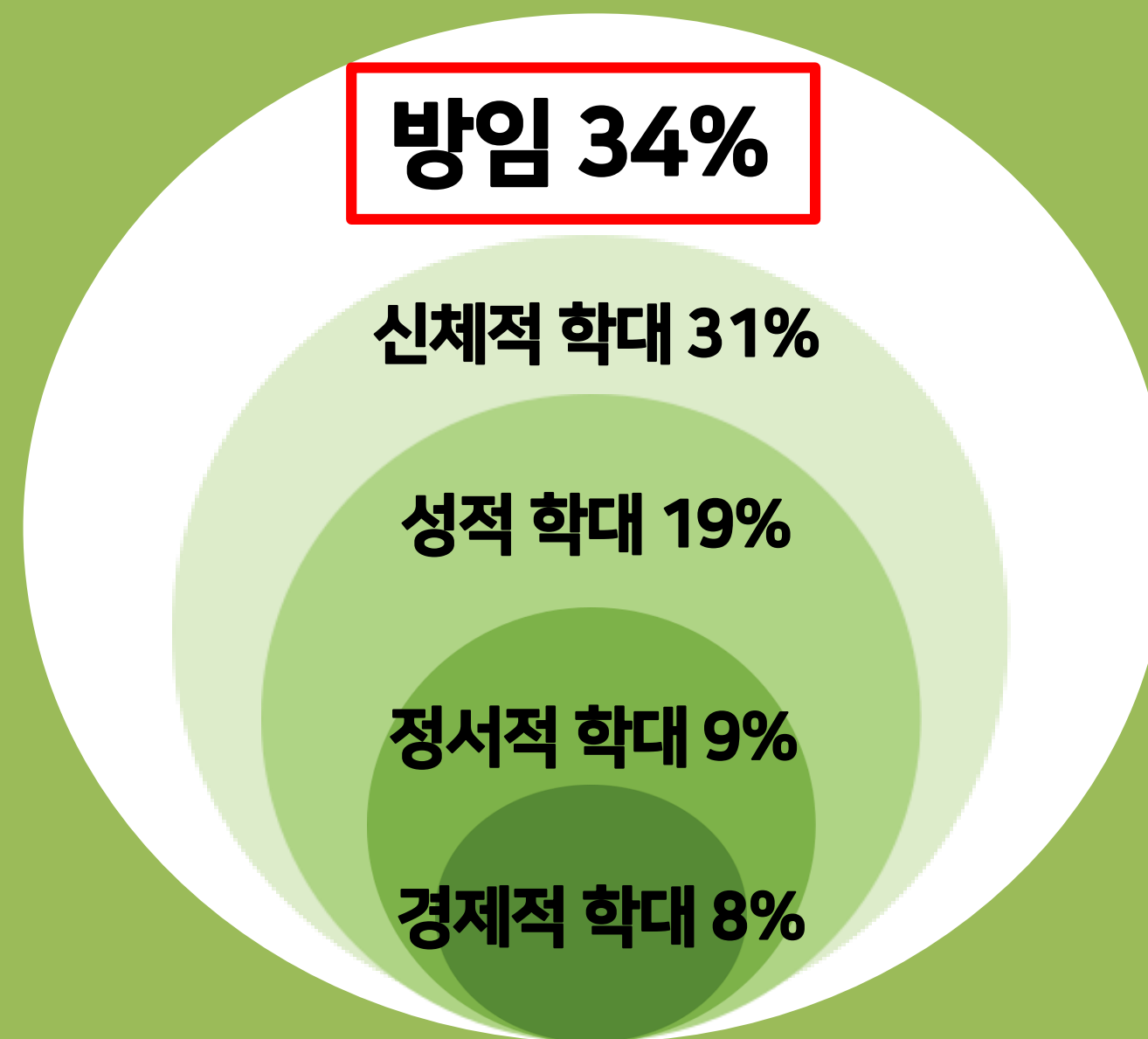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설 유형별 현황 [2022]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총 714건	83건	579건	1건	51건
	12%	81%	0.0%	7%

[자료: 2022 노인학대현황보고서-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유형 [2022]



[자료: 2022 노인학대현황보고서-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학대 현황 [2022]

시설학대	구 분		치매의심	치매진단	계
714건 (100%)	생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48명	484명	532명
			6.7%	67.8%	74.5%
		노인주거복지시설	2명	19명	21명
			0.3%	2.7%	2.9%
	이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	1	1
			-	0.1	0.1
		재가노인복지시설	6명	34명	40명
			0.8%	4.8%	5.6%
	계		56명	538명	594명
			7.8%	75.4%	83.2%

[자료: 2022 노인학대현황보고서-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신체제재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제43조(시설급여제공기준)제3항

： 시설급여기관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신체제재

국가인권위,

- (2021. 11.) 전국노인요양시설 9개소 방문조사
 -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지침 미비
- (2022. 7.)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권고
 - 「노인복지법」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 명시, 사용 최소화 대안 마련

의료기관(병원)의 신체제재

·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 국가인권위, 신체보호대 사용의 법률적 근거 마련 권고
- (2015. 5)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요양병원 환자 제한 근거 마련

·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

- (2020.2.)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제36조제1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2020.2.28.]

! 신체제재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별표7

–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1. "신체보호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2. 신체보호대는 입원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 동안** 사용한다.
3.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및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주된 증상, 과거력(過去歷), 투약력(投藥歷), 신체 및 인지 기능, 심리 상태, 환경적 요인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

신체제재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별표7

나.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해야 한다.

다.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를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설명 날짜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목 단서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신체제재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별표7

4.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는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어야 한다.

나. 의료인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기록하여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의 기본 욕구를 확인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다. 의료인은 신체보호대의 제거 또는 사용 신체 부위를 줄이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신체제재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별표7

5. 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의 사용 사유가 없어진 경우

나. 신체보호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다. 신체보호대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6. 요양병원 개설자는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의 정의, 사용 방법 및 준수 사항

나.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다. 신체보호대 외의 대체수단 및 환자의 권리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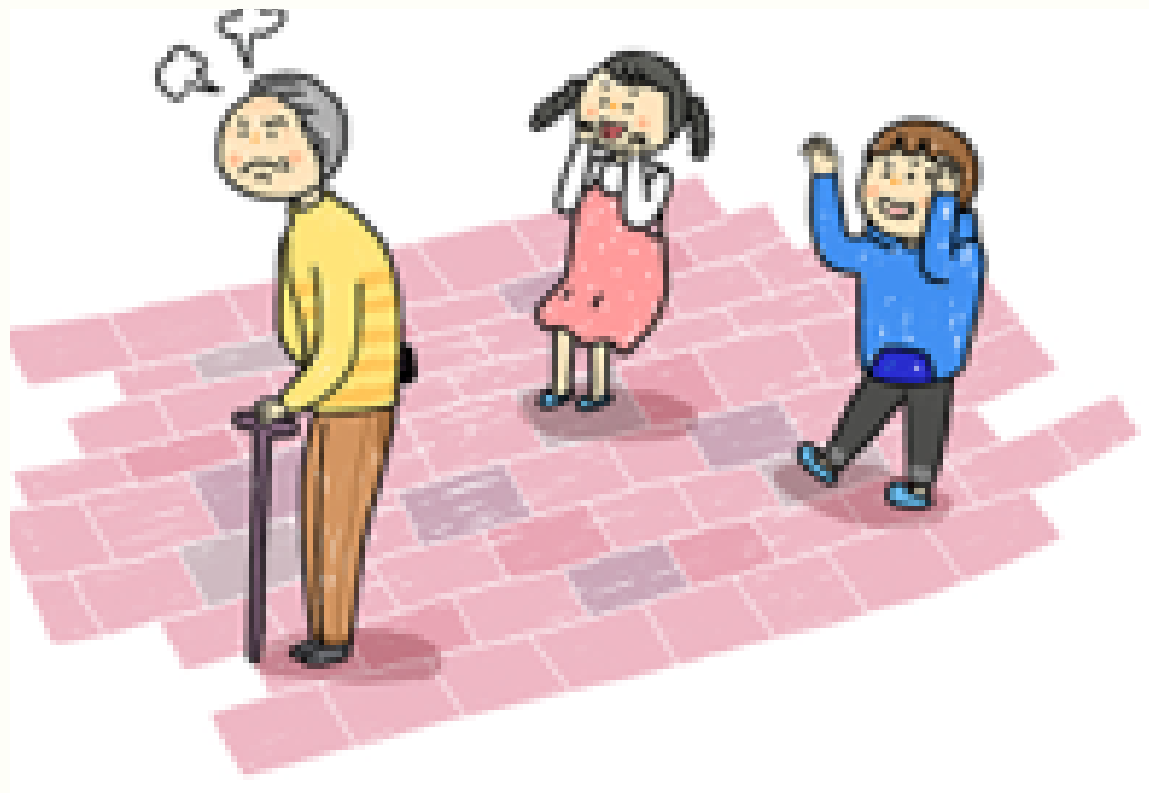
(준비)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 협조와 동의를 구한다.

(확인) 만족했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묻는다.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부만증 또는 부표정인 모습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가족 또는 보호자와 대화가 거의없고 눈치 보는 모습
-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외부활동을 회피하는 모습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대표적 행위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행위
- 일상생활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하는 행위
- 사회활동, 연락 등을 방해
- 위협, 협박, 고함, 욕설
- 모욕을 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예측징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잠을 못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가족 또는 보호자와 대화가 거의없고 눈치 보는 모습
-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외부활동을 회피하는 모습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적 학대 대표적 행위

- 강제적인 성관계 강요 및 시도 행위
-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케어를 실시하는 행위

예측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진단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 (2018) 요양보호사가 복도에서 입소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

- ☞ 1심 무죄, 노인복지법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적어도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

- ☞ 2심 유죄(벌금 50만원),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낸 채 기저귀를 가는 장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 (2021)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가지러 생활실을 나가면서 가림막을 치지 않아 입소노인의 하반신을 노출시킨 행위

- ☞ 유죄(벌금100만원), 요양보호사는 재판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간 행위는 성적 학대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있는 노인이라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간다면 당연히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 라고 하며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 대표적 행위

- 노인의 허락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대리권을 악용하는 행위
-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예측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함
-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은행 계좌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경제적 학대에 따른 행정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시설

· (2018) 연고가 없는 장기 입소 노인의 기초연금을 사용하면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B씨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계좌에서 B씨의 기초연금 240만5800원을 임의로 출금해 사용했음에도 증빙자료는 73만6600원에 불과하고, 그 사용내역 역시 벌꿀을 통 단위로 사는 등 B씨를 위해 실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 며 **경제적 학대로 판정**

➡ 지자체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 를 이유로 **시설장 교체 처분**

➡ 시설은 의사능력이 부족한 B씨를 대신해 기초연금을 관리해왔을 뿐 경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시설장 교체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법원**, "무연고자로서 의사능력이 부족한 B 씨를 위해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었더라도, 엄격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용하고 그 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보관했어야 한다. A 요양원은 계좌를 사용하면서 이 같은 관리의무의 해태를 넘어서 방임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며 A 요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방임]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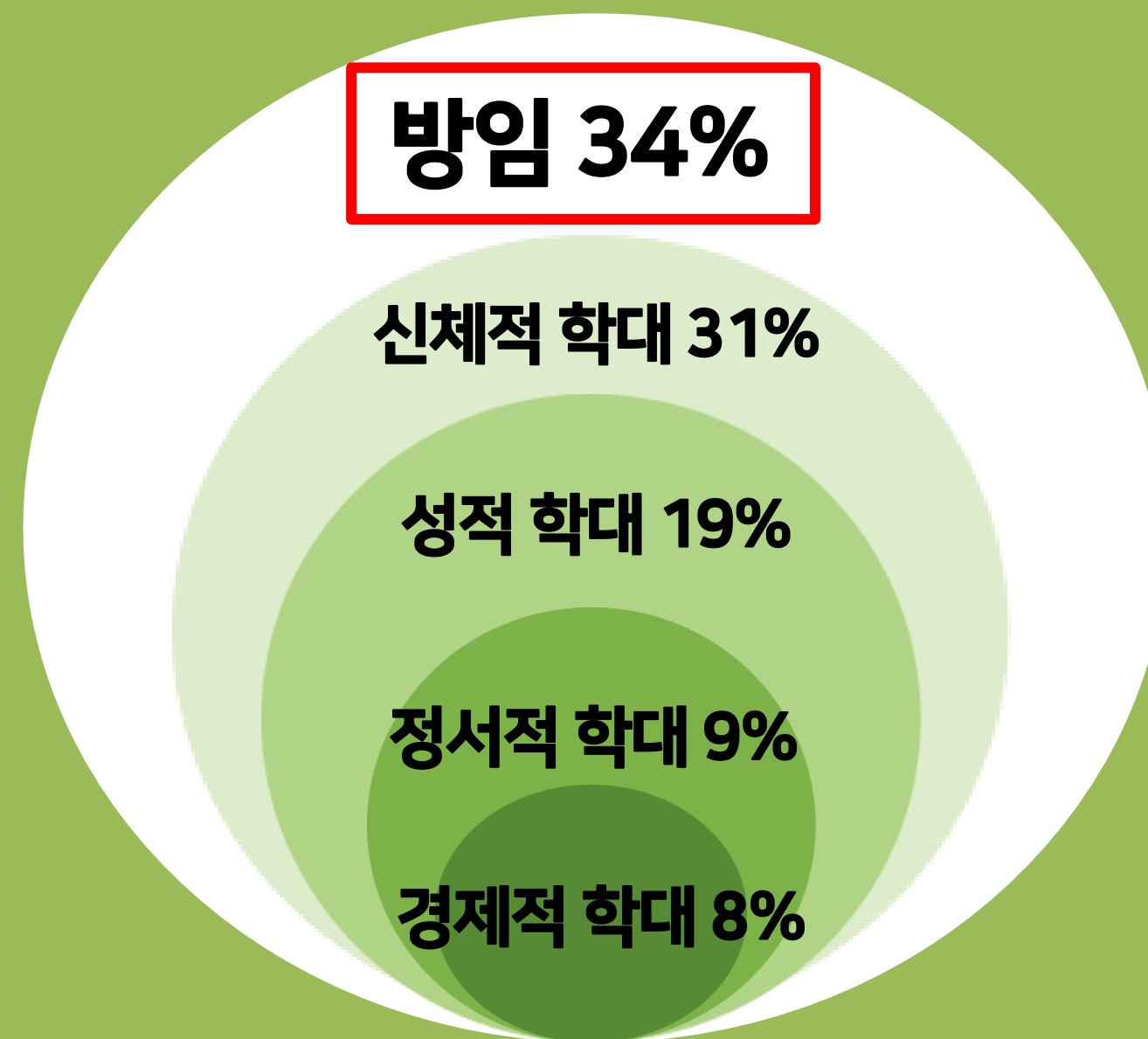
방임 대표적 행위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 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
-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는 행위
-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

예측징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
- 노인의 건강, 주변환경의 안전위험 증후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주거환경

학대 유형 [2022]



[자료: 2022 노인학대현황보고서-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1.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방임 확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5조의3)

- ☞ 노인들이 스스로 치료행위를 선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요양원 등 보호자는 적극적으로 치료행위에 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방임 확대로 처벌하도록 함
- ☞ 이 때 **치료행위의 주체는 '의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시설학대 예방법]

시설학대 예방



1 교육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인권교육 (「노인복지법」 제6조의3)

2 관계

- 보호자와 입소자 상태 수시 공유

3 기록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상담일지, 사진, 문자 등



감사합니다.



대구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